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865

발의연월일: 2023. 6. 23.

발 의 자:권칠승·정태호·변재일

박 정・임호선・임종성

기동민 · 김철민 · 도종환

유기홍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(헌법재판소 2021. 6. 24. 선고, 2018 헌가2 결정)의 취지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, 불처분 결정보다 더 경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부의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를 해당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 간 보존한 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).

법률 제 호
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"을 "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제1항 각호"를 "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
- ④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처분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사경력자료의 정리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전에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심리불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수사경력자료의 정리)	제8조의2(수사경력자료의 정리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①
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	<u>제</u> 2항부터 제
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	<u>4항까지의 규정</u>
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	
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	
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
	원소년부의 심리불개시 결정
	이 있는 경우
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	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-
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	
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이	<u>.</u>
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	
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	
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	
터 기산(起算)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한
	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2
	년으로 한다. 이 경우 그 기간은
	신리북개시 결정이 있은 낙부터

	기산한다.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